

의안번호	제 2023 - 6호
보 고 연 월 일	2023. 4. 24. (제12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1. 개요	2
2. 신규 위촉 대상자	2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3
4. 전문위원 구성	4
II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결과 보고	5
1. 공청회 개요	5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5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6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15
IV.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6
1. 개요	16
2. 의견조회 결과	17
V.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관세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9

1. 개요	19
2. 관련 규정	19
3. 공개 방법	20
4. 추진 일정	20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21

1.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3개 단체	21
2. 온라인 청원(청원24)	21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22
4.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24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53차	2023. 4. 1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해 제시된 공청회 의견, 관계기관 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제시된 관계기관 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3. 2. 21.자로 이재신 전문위원 임기만료
- 2023. 2. 24.자로 김형찬 전문위원 해촉(사임)
- 2023. 3. 6.자로 김희연 전문위원 임기만료
- 2023. 3. 27.자로 최승원 수석전문위원 해촉(사임)
- 2023. 4. 11.자로 김혜경 전문위원 해촉(사임)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신규 위촉 대상자

-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023. 2. 22.자)
- 이민우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연구기획부장(2023. 2. 25.자)
- 김현아 변호사(2023. 3. 7.자)
-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023. 3. 28.자)
- 최호진 단국대 교수(2023. 4. 12.자)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3. 4. 24.(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김세종 수석전문위원, 김용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김현아 전문위원, 최호진 전문위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4. 전문위원 구성

[2023. 4. 12.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최초 위촉일
법원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3. 3. 28.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3. 2. 22.
	최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2. 3. 2.
검찰	강선주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2022. 7. 12.
	김한울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2022. 2. 17.
변호사/ 군법무관	김현아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2023. 3. 7.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21. 8. 17.
	이민우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연구기획부장	군판사	2023. 2. 25.
교수/ 전문가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5. 16.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3. 4. 12.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8. 20.
	박성훈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정보·통계연구 센터장	2019. 9. 9.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7. 5.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 7. 5.

II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3. 3. 27. (월) 14:00~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청 : 현장 방청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 진행 내용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지정토론 및 답변, 방청객 질의·답변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 신숙희 상임위원
- 발표자 : 최승원 수석전문위원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지정 토론자
 - 김병필(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
 - 류경은(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현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지정 토론자
 - 김민정(변호사)
 - 박형준(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 이근우(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지정 토론자
 - 박수연(법률신문 법조팀장)
 - 박 승(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교통수사계 기획반장)
 - 윤준석(변호사)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1)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양형기준 일반]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건의 대다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만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무상 한계가 있으므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도 필요하다는 의견(김병필 교수)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새로이 양형기준을 설정할 경우 자유형과 벌금형에 대한 기준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답변(강선주 전문위원)이 있었음

[유형 분류]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유형 분류에 관하여, ①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이 상이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항 제11호 위반범죄는, 같은 항 제9호 위반범죄와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거나(류경은 교수), ②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또는 비밀침해범죄에 가까우므로 이를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위반범죄와 다른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전현욱 선임연구위원)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① 소유형 분류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는 법정형이 동일하고, 형량 통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혀 이질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동일한 소유형으로 분류되더라도 무방하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과 ②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한 2020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최준혁 전문위원)이 있었음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유형 분류에 관하여,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 범죄'를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라는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어색하다는 의견(류경은 교수)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소유형 1(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과 소유형 2(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고 다수의 양형인자를 공유하므로 하나의 대유형으로 묶을 수 있고, 이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오히려 유형분류의 체계와 관련성을 불분명하게 할 우려 있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권고 형량범위]

- 대유형 1 소유형 1(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권고 형량범위를 조금 더 넓고 유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류경은 교수)에 대하여는, 기본영역에 대상범죄 통계의 80% 이상을 포섭하였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폭을 더 넓게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법정형 상한을 고려할 때 권고 형량범위의 규범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전현욱 선임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의 권고형량은 현행 양형실무의 상당수를 반영하는 형태로 정해지고 있

어 기존의 양형실무를 완전히 무시한 ‘규범적 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최준혁 전문위원)이 있었음

[양형인자]

-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거나 우연히 연결된 타인의 SNS 계정에 들어가는 등 침입 수단이나 방법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 수단에 관한 양형인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류경은 교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도 죄질에 따라 경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삼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양형기준 설정의 시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형벌이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법정형을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지금 시점에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는 주장(김병필 교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벌규정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업, 사업자가 구조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의 불이행과 그로 인해 벌어진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인데, 그 외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등에 대한 범죄는 여전히 형사벌의 제재가 필요하고, 이번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은 실제 빈발하거나 양형

기준 설정의 규범적 요구가 큰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해당 양형기준의 설정이 시의성이 있다는 답변(강선주 전문위원)이 있었음

(2)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권고 형량범위]

- 관세범죄 양형기준에서 관세포탈 및 무신고 수입 등 유형에서 통고처분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일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김민정 변호사)에 대하여, ① 관세범죄 양형기준은 구공판 사건 중 징역형 선고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통고처분과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경미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없고, ② 무신고 수입 및 부정수입의 권고 형량범위를 하향할 경우 오히려 각 영역 간의 균형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의 구별 필요성이 크지 않게 되어 특별감경인자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③ 무신고 수입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범죄나 법정형이 더 낮은 조세포탈(5억 원 이상)보다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가 낮고, ④ 관세포탈의 권고 형량범위도 범죄성향이 유사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조세포탈 유형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낮게 설정되어 권고 형량범위 하향은 부적절하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실질적인 양형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수형인 몰수·추징 관련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견(김민정 변호사)에 대하여,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필요적이므로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없고, 관세범죄에서 몰수·추징의 선고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경우

도 상정하기 어렵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양형인자]

- 무신고 수입 등에서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수출에서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김민정 변호사)에 대하여, 무신고 수입에서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가중인자와의 균형, 결과반가치 측면, 양형실무를 고려할 때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무신고 수출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수출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밀수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을 각각 삭제하자는 의견(박형준 관세행정관)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양형실무를 고려할 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고, 양형인자

해석은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한 법관의 양형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 무신고 수입 등의 특별감경인자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단서인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나,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박형준 관세행정관)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라면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안은 부정수입에 해당할 수도 있어 무신고 수입 범죄와 관련된 양형인자의 정의 내용 단서에 별도로 포함할 필요 없다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 관세포탈죄에서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의 내용은 피고인의 자발적 반성이 아니라 국가의 집행에 의한 경우인데 감경인자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이근우 교수)가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양형인자에서 포탈된 관세의 징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은 결과불법의 회복과 가중인자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므로 적절하다는 답변(박성훈 전문위원)이 있었음

(3)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권고 형량범위]

-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하다는 의견(박수연 법조팀장)에 대하여, 이번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유형과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의 다수범 가중을 통해 가중된 양형이 가능하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양형기준안에 따른 만취운전 교통범죄의 최대 형량

- 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0년6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어린이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7년6월 + 3년 = **최대 10년6월**
- 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5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어린이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2년 + 3년 = **최대 15년**
- ③ 위험운전 치상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0년6월**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위험운전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7년6월 + 3년 = **최대 10년6월**
- ④ 위험운전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5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위험운전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2년 + 3년 = **최대 15년**
- 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최대 **12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상 후 도주 2년 - 9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9년 + 3년 = **최대 12년**
- ⑥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치사 후 유기도주의 경우, 최대 **21년**
 -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사 후 유기도주 6년 - 18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8년 + 3년 = **최대 21년**

[양형기준 공통원칙]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박수연 법조팀장)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이고, 양형통계상 가장 많은 벌금 1,000만원이 기본영역에 포함되도록 설정(양형통계상 벌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는 전체의 1% 남짓에 해당)하였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어린이 치상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영역이고, 치상 후 도주는 도주라는 행위 태양에 고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치상 후 도주'를 더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박 승 경감)에 대하여, 치상 후 도주와 어린이 치상은 법정형이 거의 유사하고, 양형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에 큰 차이를 두기 어렵다는(가중영역은 치상 후 도주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 답변(최익구 전문위원)이 있었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의 권고 형량범위를 더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박 승 경감)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법정형보다 낮으므로, 비록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엄벌의 필요

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우선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죄질이 불량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등으로 적정한 형량범위 도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최익구 전문위원)이 있었음

[양형인자]

-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박 승 경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둘 실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사정을 곧바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범죄 발생 자체만으로 양형을 가중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최익구 전문위원)이 있었음
- 특별감경인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의 정의규정 중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라는 문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동'이 아닌 오로지 '주차만이' 목적인 경우로 명시하거나 주차를 위한 공간의 반경을 설정하는 등 양형기준이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윤준석 변호사)에 대하여, 정의규정은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할 한정적인 상황의 조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를 위한 공간의 반경까지 설정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으며, 나머지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양형실무의 영역이라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특별가중인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의 정의규정에 물적 피해 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예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윤준석 변호사)에 대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어 가중인자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인명 피해의 경우를 가중인자의 예시로 넣기 곤란하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차량에 뛰어드는 경우 양형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묻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하여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대유형 1의 중유형 다.)이 적용되고, 그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양형인자의 정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IV.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양형기준 정비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대상 기준안

-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2022. 12. 5.)에서 의결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 제122차 회의(2023. 2. 13.)에서 의결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2) 조회 기간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 2022. 12. 9. ~ 2023. 1. 10.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 2023. 2. 17. ~ 2023. 3. 20.

(3) 회신 기관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 54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 44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및 수정안

- 36개(국회 5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 28개(국회 1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4) 회신 자료

- 별첨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및 수정안, 양형기준 정비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와 같음

2. 의견조회 결과

(1)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1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와 같음

(2)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2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와 같음

(3)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및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3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및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4)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 별첨4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V.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관세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3. 4. 24.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3. 5. 초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3. 5. 중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3개 단체

[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한 전국 택시 100만 가족 호소문 제출]

(1) 주요 내용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부터 택시 운전자의 폭행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 합의 등을 양형 기준으로 삼아 경미하게 처벌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선량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

(2) 첨부

- 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한 전국 택시 100만 가족 호소문 제출[별지2]

2. 온라인 청원(청원24)

[양형위원회 형량(양형)기준 개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서 제출]

(1) 주요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특가법(일명 ‘윤창호법’) 관련 조항에 의하면 무기징역이 가능한데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망시에는 8년, 교통사고 후 도주(일명 ‘뺑소니’)의 경우 10년 형에 불과하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취지

(2) 첨부

- 청원서(김○훈)[별지3]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2)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3. 10. 까지 총 23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2. 12. 15. ~2023. 1. 29.(16)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요청
2	2022. 12. 8.(1)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양형기준 문의
3	2022. 12. 11. ~ 2022. 12. 21.(2)	○특정사건 엄벌 요청
4	2022. 12. 20.(1)	○양형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5	2022. 12. 28.(1)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 요청
6	2023. 1. 1.(1)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 요청
7	2023. 1. 9.(1)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1번, 5번, 6번,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현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그 외 특정사건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 제작 체험 대상 범죄 외에 체험 대상 범죄를 다양화 하는 등 매년 추가 콘텐츠 제작을 진행,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콘텐츠 제작 및 그 운영에 있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3)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3. 3. 10. 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22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 요지
1	2023. 1. 31.(1)	○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 양형 의견
2	2023. 2. 2.(1)	○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3	2023. 2. 7. ~ 2023. 2. 11.(3)	○ 특정사건 강력 처벌 요청
4	2023. 2. 4. ~ 2023. 3. 10.(17)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4.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1)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3. 10. 까지 총 23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2. 12. 27.(1)	○ 개별사건 양형에 대한 불만
2	2023. 1. 4.(1)	○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관련 건의
3	2023. 1. 5.(1)	○ 동물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
4	2023. 1. 9.(1)	○ 백신 미접종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요청
5	2023. 1. 12.(1)	○ 보이스피싱 범죄 형량 강화 요청

6	2023. 1. 14.(1)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7	2023. 1. 18.(1)	○이유 없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요청
8	2023. 1. 20.(2)	○마약사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반대
9	2023. 1. 29. ~ 2023. 1. 30.(3)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10	2023. 1. 30.(2)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 불만
11	2023. 1. 31. ~ 2023. 2. 3.(5)	○운전자 폭행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보수적인 양형기준 필요
12	2023. 2. 14.(1)	○진정성 없는 서류 제출 시 성범죄 감형 반대
13	2023. 2. 27. ~ 2023. 3. 7.(3)	○정신질환 및 책임능력 유무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요청

○ 1번, 7번,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 제작 체험

대상 범죄 외에 체험 대상 범죄를 다양화 하는 등의 매년 추가 콘텐츠 제작을 진행,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콘텐츠 제작 및 그 운영에 있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추가될 체험 대상 범죄는 현재까지 미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5번, 6번, 9번, 12번, 1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0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운전자 폭행 사건의 각 개별적인 판결결과나 선고형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양형기준의 요청 및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3. 3. 10. 까지 총 3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	------------	-------

1	2023. 3. 10.(1)	○ 운전자 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	-----------------	--------------------------

(2)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3. 10. 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3. 2. 1.(1)	○ 범죄자 유형 분류 및 양형 관련 가이드라인 의견 제시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대검찰청에서 이첩되어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범죄자 유형화 및 양형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별지1]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김 세 종 (金 世 鍾)
	생년월일	1972. 4. 15.
	출생지	대구
	소속	서울고등법원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학 력		
○ 1991. 대구 경원고등학교 졸업		
○ 199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주 요 경 력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 2001. 서울지법 남부지원 예비판사		
○ 2002.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 2003.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5.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8.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4. 2.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		
○ 2015.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겸임		
○ 201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 2018. 2. [現]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성 명	김 용 민 (金 容 民)
	생년월일	1978. 4. 10.
	출생지	대전
	소속	서울고등법원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학 력		
○ 1997. 대전동산고등학교 졸업		
○ 200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 요 경 력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5.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 2005. 군법무관		
○ 2008.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 2.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15. 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 2017. 2. 수원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겸임)		
○ 2019.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20. 2. 24. [現]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성 명	이 민 우
	생년월일	1980. 11. 26.(양)
	출생지	여수
	소속	국방부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신학교	한양대학교
학 력		
○ 2009. 2.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 학사		
○ 2015. 5. 미국 육군 군법무관학교 Graduate course /법학석사		
주 요 경 력		
○ 2022. 7. 1. 국방부 군사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연구기획부 / 부장		
○ 2022. 3. 30. 육군 군사법원 재판1부 / 군판사		
○ 2021. 1. 15. 육군 종합행정학교 법무교육단 법무학과 / 학과장		
○ 2018. 11. 12.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 법무보좌담당		
○ 2017. 4. 12.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 / 군판사		
○ 2016. 3. 31.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 / 법무군종보직장교		
○ 2015. 6. 11.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 작전법장교		
○ 2014. 7. 23. 미국 육군 군법무관학교 국외과견		
○ 2013. 3. 28. 육군 제12보병사단 법무참모부 / 법무참모		
○ 2011. 4. 6. 육군 군사법원 재판1부 / 군판사		

	성 명	김 현 아
	생년월일	1973. 03. 30
	출생지	광주광역시
	소속	법률사무소 휴먼
	출신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학 력		
○ 1991.3.~1995.8.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6.9.~2000.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과 졸업		
○ 2014.9.~2016.1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 박사		
주 요 경 력		
○ 2014. 법무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2019.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 2021.12~2022.12 법무법인 온화 변호사		
○ 2023.1.~현재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 2022.6.~현재 한국디지털 윤리학회 부회장		
○ 2022.~현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7.~현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2021.3.~2022.2.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 2017.~현재 서울중앙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경력

○ 2017.~현재	서울중앙경찰서 가정폭력심사위원회
○ 2017.~현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2017.~현재	한국사이버성폭력지원센터 법률지원단
○ 2017.~현재	부천시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2018.~2020.	여성가족부 2018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사건처리지원단/컨설팅위원회 위원
○ 2017.~2019.	법정부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추진위원회 위원
○ 2021.2.~현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2018.~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 자문단
○ 2018.~현재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 2020.5.~현재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센터 법률지원단
○ 2021.~현재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센터 법률지원단
○ 2017.~현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회
○ 2019.3.~2020.2.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 2019.5.~2021.5.	경찰청 마약류범죄 수사자문위원
○ 2017.12.~2019.12.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2021.5.~2022.2.	경기도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위원
○ 2020.7.~현재	법무부 난민위원회 자문위원
○ 2018.12~2020.1.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 2021.6.~현재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 2018.8.~2020.8.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2018.1.~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2018.~현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1.2.~현재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사
- 2019.2.~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위원
- 2022.8.~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 2017.6.~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사건 조정위원

	성 명	최 호 진
	생년월일	69. 11. 15
	출생지	대구
	소속	단국대학교 법학과
	출신학교	경북대학교
학 력		
○ 1996. 2	경북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99. 2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2003. 8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주 요 경 력		
○ 2005. 3~	[現]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 2018~2021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	
○ 2018~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 2020~현재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 2021~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자재산환부심의	
○ 2021~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 2021~2023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자문위원	
○ 2022~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별지2] 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한 전국 택시 100만 가족 호소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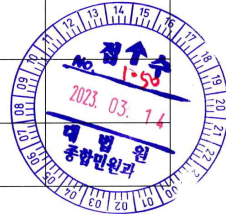
우편제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06237 서울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02)557-7351 / 전송(02)554-7359
 ☎06149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02)555-163 / 전송(02)568-7195
 ☎14303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02)2210-8500 / 전송(02)2210-8580
 ☎04756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 ☎(02)2299-3200 / 전송(02)2281-2100

문서번호	전개택연 제53호	선 결		지 시	
	전 택 련 제35호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공 람	
	전택노련 제64호		:		
	민택노련 제35호	번 호			
시행일자	2023. 3. 8.	처 리 과			
수 신 대법원장		담 당 자			
참 조					

제 목 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한 전국 택시 100만 가족 호소문 제출



1. 민생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대법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만취 상태에서 해당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 앞서, 전국 25만 택시종사자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홍보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초범, 합의 등을 양형

종합민원과
접수일 2023-03-14 접수번호 792

기준으로 삼아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범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운수종사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좌절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동 범죄로 인하여 재산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국 택시 100만 가족의 호소문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호소문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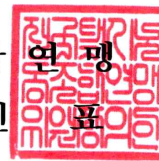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박 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박 복 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강 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 수 영



‘운전자 폭행’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적용을 촉구하는 전국 택시 100만 가족 호소문

대중이 이용하는 택시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규모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운전자와 공공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15년 6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의10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개정 초기에는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증가를 보이던 운전자 폭행사건이 '21년에는 무려 4,259건(피의자 4,464명)으로, 전년도 발생건수인 2,894건 대비 47%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더구나 과거 10년 간 동종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솥방망이에 그쳤다는 점('10~'16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건수 26,325건, 구속률 0.78%)에서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지난 '21년에도 발생 건수 대비 구속된 피의자는 단 32명(0.7%), 처벌 역시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쳐 해당 범죄를 특가법에 규정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택시 4개 단체는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엄정히 적용함으로써 운전자 폭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입법취지 및 보호법의 달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건의('23.1.26.)하였고, 시·도 단위 지역조합에서는 택시운전자 폭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은 운행 중이던 택시를 가로막아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해당 택시를 훔쳐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의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 회복을 하였거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인 것과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기준으로 삼아 경미한 처벌을** 내려 우리 택시업계를 포함해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범죄자를 양성하기 위해 법의 엄중한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범죄가 반복·발생**하고 그 피해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사고로 추가적인 인적 피해**와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면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법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 택시 100만 가족을 대표하여 호소합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는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 더 나아가 보행자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정도가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도 피해 정도와 보호법의 측면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자 폭행은 위험성과 심각성에 비해 현재 일반 범죄의 양형과 차별성을 구분하기 힘들 만큼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주취범죄에 대해서는 초범·합의·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대부분 감형하고 있어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입법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주취 범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원칙 아래 가중 처벌하는 등 엄격한 양형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폭행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 범죄로 인하여 가중되는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양형 기준이 적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3. 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별지3]

기본 정보

접수번호	20230412-9740000-0001		
접수일시	2023-04-12 10:34	처리기관	2023-04-12~2023-07-11
청원서 접수기관	대법원	청원 공개 여부	공개
청원 결과 수신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비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우편		진행 상황 수신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비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메일
담당자 성명	류순형	접수 방법	온라인

청원 정보

청원사항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청원제목	양형위원회 형량기준 개편
청원 내용	
<p>대전 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음향호법에 의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는 가능함. 하지만 양형위 기준대로 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8년 형소나시 10년 밖에 안됨. 이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형량기준을 무기징역으로 높 일것을 간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사람이 죽어야지 그때 바꿀건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합니다. https://youtu.be/xYOa67hDCJA</p>	